

준 설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 (1) 본 시방서는 “2015년 하수관거준설 및 세정공사(연간단가)”에 적용한다.
- (2)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 (3) 주요내용
 - (가) 하수관로 및 암거, 빗물받이 준설, 세정(청소)
 - (나) 기타 (가)사항에 없으나 필요한 사항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 (1) “지시”는 우리구의 명에 의해 감독관이 도급자에게 감독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승락”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도급자가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 (3) “협의”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 등의 준수

- (1) 도급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 법령, 조례, 규칙등과 우리구와 타기관(공사)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근로기준법
 - (나) 도로법
 - (다) 하수도법
 - (라) 건축법
 - (마) 도로교통법
 - (바) 하천법
 - (사) 환경보전법
 - (아) 폐기물관리법
 - (자) 문화재보호법
 - (차) 건설업법

-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4. 수속절차 및 제출서류

- (1)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도로사용, 작업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발주자가 할 수도 있다)
- (2)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 (가)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
 - (나) 착공계
 - (다) 공정표
 - (라) 도급내역서
 - (마) 시공계획서 (공정표 포함)
-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 한다.
- (4) 도급자는 일보를 매일 우리구가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제출 할 것.
- (5)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작업 건별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지시 물량이 완료되었을 때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작업완료보고서
 - (나) 준공계
 - (다) 작업기록사진(전,중,후)
 - (라) 준공도서 (위치도)
 - (마)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5. 현장체계

- (1) 도급자는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에 종사시켜야 한다.
- (2) 도급자는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구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 (3) 도급자는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시 주민과 협조

- (1) 도급자가 작업시, 인근 주민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보상 및 배상

- (1) 도급자는 하수도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한다.
- (2) 도급자는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이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8. 공정관리

- (1) 도급자는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 (2) 공정관리는 실시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 (3) 예정작업 공정과 실적에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 (4) 매월말 작업실적 보고서를 작성, 작업의 진척 상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 (6) 빗물받이 준설토는 현장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준설 즉시 중간 집하장으로 운반한다.
- (7) 중간집하장 운용
 - 중간집하장 진출입시 준설토 잔재(토사오니, 침출수)가 도로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비산먼지, 악취 등)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비산먼지(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진출입시 바퀴, 차체하부 물청소) 및 중간 집하장 주변을 수시로 물청소 한다.
 - 악취 및 해충의 번식 등에 대비하여 중간집하장 적치토량은 최소화하고 건조 완료후 지체없이 반출토록 한다.

9. 작업기록 사진제출

- (1) 도급자는 작업상황 사진을 촬영후 감독관에게 제출 승낙 받는다. 또는 우리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작업상황에 대한 사진 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안 전 관 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 (1) 작업 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 (2)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 (3)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 (1) 도급자의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3) 작업에 사용하는 기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 (4) 작업중 사고 발생시에는 비상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준 설 작 업

1. 일반사항

- (1) 도급자는 작업장소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2) 작업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 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 (3)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을 완전히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 (4) 도급자는 작업시 현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5) 도급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할 경우 및 감독관이 사고 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 (6)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 후 물청소한다.
- (7)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준설작업

- (1) 작업시간 : 간선도로 등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는 흡입식 준설차로 야간작업을 검토하여 교통체증을 방지한다.
- (2)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 한다.
- (3) 토사의 운반
 - (가)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탈수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중간집하장 활용)
 - (나)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 (4)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김포매립지에 운반차량 등록 후 반출하거나 재활용 준설토 처리 허가업체에 반출한다.
- (5) 세정수
 - (가)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소화전을 사용하고 그사용량에 대하여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 (6) 기타
 - (가)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나) 도급자는 준공 검사시 하수도준설 도면(관내도)를 작성제출한다.
 - (다) 도급자는 작업완료때마다 하수도GIS시스템에 작업완료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준설토량 정산방법

(1) 서울시 하수도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정산한다

(2) 준설토 정산방식

$[\{\text{계근량} \times (1 - \text{반출직전 함수율})\} \times (1 + \text{반입직후 함수비})] \div 1.75\text{t/m}^3$ - 습윤

$[\{\text{계근량} \times (1 - \text{반출직전 함수율})\} \times (1 + \text{반입직후 함수비})] \div 1.95\text{t/m}^3$ - 포화

(3) 각 공종별 준설토작업 물량 정산은 준설토 계근량에 함수비를 반영하여 환산된 준설토량과 작업완료량을 비교하여 적은량으로 정산한다.

4. 준설토 함수비 시험의뢰

(1) 준설토공사의 준설토에 대한 함수비 측정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감독의 확인을 득한 시료를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의뢰하며, 각 공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시료를 채취한다.

가) 중간집하장 반입시

① 공종별, 작업지시 차수마다 1회이상 시행

나) 중간집하장 반출시

① 공종별 1회이상

제 4 장 기 타

1. 작업의 완료

준설토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관거 밖으로 반출, 중간집하장에 적치하여 탈수조치 후 재활용 처리업체로 반출한다.

2. 검 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도급자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잔토처리, 반출증 및 계근장 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하고, 재시행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규정 이외의 사항

-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등에 특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